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안내

-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급 여부는 신청 접수 후 검증을 통해 결정되며 소상공인 대상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지원개요

지원대상	대구시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단, 2020년 2월말 기준 등록된 기관에 한함)
지급내용	제공기관 1개소당 100만원 정액지급
지급방식	제공기관장(대표자) 명의 계좌입금(현금)
지급시기	2020. 5. 22.(금)(예정) * 지급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소관 부서 방문접수
접수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복지정책과 (☎ 053-661-2513) ▶ 동구 복지정책과 (☎ 053-662-2518) ▶ 서구 복지정책과 (☎ 053-663-2557) ▶ 남구 행복정책과 (☎ 053-664-2518) ▶ 북구 복지정책과 (☎ 053-665-2515) ▶ 수성구 복지정책과 (☎ 053-666-2514) ▶ 달서구 복지정책과 (☎ 053-667-2515) ▶ 달성군 희망지원과 (☎ 053-668-3744)
신청기간	2020. 5. 6.(수) ~ 5. 15.(금) 09:00 ~ 18:00 * 토·일요일 제외
신청주체	제공기관장(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 제공기관 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참), 제공기관장(대표자) 명의 통장사본